

[일련번호 : 1]

# 경 기 도 체 육 회

## 시 정 요 구

[제 목] 스포츠공정위원회 미구성 및 규정 미제정

[소 속 기 관] 경기도국학기공협회

[내 용]

경기도국학기공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국학기공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는 「규정」 제38조에 따라 도국학기공협회, 시·군국학기공협회 등의 제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4항에는 규약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 시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하며 ①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②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위원회 제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또한 구성하지 않아 위원회의 기능인 협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국학기공협회는 도내 국학기공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기도국학기공협회장은

○ 규정 제38조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제 규정 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경 기 도 체 육 회

### 시 정 요 구

[제 목] 협회 경영공시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국학기공협회

[내 용]

경기도국학기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국학기공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cafe.naver.com)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 「규정」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제3항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56조(경영공시)에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협회는 감사기간 내(\*\*\*\*.\*\*.\*\*~\*\*.\*\*.) 확인해본 결과 「규정」 제46조에 따른 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와 동 「규정」 제56조의 공시항목인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 집행내역, 외부평가 결과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있다.

##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국학기공협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규정」 제56조 (경영공시)에 따라 경영공시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기도국학기공협회장은

가. 협회 「규정」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에 따라 결산서(재산증 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조속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협회 「규정」 제56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결과,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경기도체육회

## 시정요구

[제 목] 각종 위원회 미구성 및 규정 미제정

[소 속 기 관] 경기도국학기공협회

[내 용]

경기도국학기공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국학기공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는 「규정」 제37조에 따라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외의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표1>과 같다.

<표1> 각종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연번	위원회명	목적	기능	비고
1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약 제37조에 따른 이사의 자문기구	종합적 경기력향상과 기본계획, 스포츠과학 연구발전 및 훈련 개발,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	
2	대회위원회		대회 준비,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대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3	생활체육위원회		생활체육 국학기공의 기본방침, 진흥에 관한 사항 등	
4	심판위원회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방법 및 기준,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 심판양성 교육, 등록, 관리, 평가 등	
5	선수위원회		선수 권익보호, 증진 및 보급, 은퇴선수 지원에 대한 자문, 운동선수 보호 및 지원사업 등	

하지만 협회는 규정 제37조에 따른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 구성이 전무하며, 제 규정 또한 미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국학기공협회는 도내 국학기공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조속한 시일 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기도국학기공협회장은

○ 협회 규정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자문기구인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각 분야별(위원회별)로 기능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경 기 도 체 육 회

### 주 의 요 구

[제 목] 각종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시 이사회 심의·의결  
미이행

[소 속 기 관] 경기도국학기공협회

[내 용]

경기도국학기공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국학기공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①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②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④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⑤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46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협회는 \*\*\*\*년 정기이사회를 통해 총회 등 \*\*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안) \*\*\*, \*\*\*, \*\*원을 심의·의결하였으나, 당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거리두기 정부방침 등의 사유로 총회 등 \*개 사업 \*\*, \*\*\*, \*\*원 세입하여 \*\*, \*\*\*, \*\*원을 집행하였다. \*\*\*\*년 사업예산(안) 및 세입결과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년 세입예산(안) 및 세입결과**

구분	****년 세입예산(안)	****년 세입결과	비고
합계	***, ***, ***원	**, ***, ***원	
****년~****년 이사회 자료	·000 000      ** ***, ***원	·000 000      ** ***, ***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사유로 **개 사업 중 *개 사업 취소 및 미진행
	·000            ** ***, ***원	·000            ** ***, ***원	
	·00000        ** ***, ***원	·000000        ** ***, ***원	
	·0000         ** ***, ***원	·000,000        ** ***, ***원	
	·0000000     ** ***, ***원		
	·0000000     ** ***, ***원		
	·0000000     ** ***, ***원		
	·0000000     ** ***, ***원		
	·000000000    ** ***, ***원		
	·0000000     ** ***, ***원		
	·00000000    ** ***, ***원		
	·000000000    ** ***, ***원		
	·000,000      ** ***, ***원		

※상위 내용은 국학기공협회 수감자료를 재구성함.

확인해본 결과 협회는 \*\*\*\*년 \*\*개의 사업계획 중 \*개의 대회(사업) 등이 취소되었음에도 사업 및 예산변경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 및 사업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국학기공협회는 규정상 이사회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점을 인정하며 차기년도부터는 각종 사업변경 및 예산변경시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국학기공협회장은**

○ 협회 규정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의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상황에 따라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동 규정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에 의거, 선 집행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경 기 도 체 육 회

### 권 고 요 구

[제 목]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국학기공협회

[내 용]

경기도국학기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국학기공협회 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협회는 회계 업무 수행의 주요기준과 절차를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회 「회계 규정」 제45조(보칙)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 「회계 규정」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회계관계 직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협회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사무차장, 사무국장, 회장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국학기공협회는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보험 가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기도국학기공협회장은

회계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어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예산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